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면허의 심사·평가 기한 및 절차,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안 제13조)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23조)

법 제25조에서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관리실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정하고,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해양수산부령 제 호

다.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와 허가, 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2항의 실태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양식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면허양식장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 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양식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 품종에 관한 사항
3. 양식장의 재개발,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양식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본다.

제5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처분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 양식장의 시설량

5. 양식업의 시기

6. 면허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및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식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양식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

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제8조(동의서 등)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10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의 시설방법·비율 및 양식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양식장에서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후단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하여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

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설치·사용할 것

나. 관리사에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패류양식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가 양식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1. 콤프레서 : 관리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척마다 1대

2. 잠수인원 : 1명

3. 분사기 : 사용금지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어장면적기준의 완화) 면허권자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양식장면적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
2.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을 말한다.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품종
4. 기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② 제1항의 양식품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

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의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어업인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등)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4. 영어조합법인
5.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양식업면허 신청 후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내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동의서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

2.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3. 양식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자료표 사본
4.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
과 양식기술의 보유현황
5. 해당 양식업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을 할 것인지의 여부
2. 양식업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
계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
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
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양식업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
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동의서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21조(면허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
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2. 양식업면허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면허의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를 해당 면허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의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과 관련된 서류심사
2. 해당 양식장의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어장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평가를 받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면허 심사·평가기준에 미달한 양식장이

해당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의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된 경우, 법 제12조제4호의 단서에 따라 심사·평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면허 심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면허의 심사·평가의 이의신청)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권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심사·평가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공익상 필요한 양식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양식업 면허를 제한·정지하는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양식장 구역의 일부가 양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양식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양식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식업을 제한·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양식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양식장 구역의 전부가 양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4. 처분내용

5. 처분일시

6.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

한다)·주소와 생년월일

제26조(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면허 및 제한·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양식업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양식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아

니한 경우

제28조(양식업권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 양식업면허번호
3. 양식업면허기간
4. 양식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양식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2. 양식장의 양식방법
3. 양식업의 시설량
4. 양식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양식장구역과 양식장구역, 양식장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는 자

3. 다른 양식장에서 다른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마을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5.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하여 다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양식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양식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양식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

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제거, 양식장청소 등 양식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하여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

사하도록 한 경우

3. 양식업권 행사자의 그 양식업권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지정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선박에만 해당된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선박에만 해당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지정 :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 해당 어선이 다른 양식장·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양식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면허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

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2.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3. 양식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4. 양식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양식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제37조(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면허권자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양식업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없음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양식방법별·양식장규모별 관리선의 척수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제39조(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포함)을 분실한 경우로서 면허권자가 분실사유, 분실일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식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41조 및 이 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제40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재발급신청) ①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 시킬 양식수산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42조(허가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 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양식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이면 제3항에 따른다.)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이면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에만 해당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의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다른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양식업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해당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번호의 부여 방식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4조(외국인에 대한 양식업의 허가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3. 관련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종합 의견
4.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는 “양식업허가”로 본다.

제45조(양식업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저장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호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제3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의 제한과 양식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거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기) ① 법 제47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양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허가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려는 경우
2. 양식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외국과의 양식업협력 및 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
2.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에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유효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양식업허가증 및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양식업의 변경허가) ①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수산물의 종류
2. 양식시설의 종류와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양식업허가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변경 사실을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양식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양식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허가를 받거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폐업 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 규칙 제54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3조제6항 후단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 사실을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양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폐업 신고를 받아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4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설은 당초의 양식업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양식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5조(양식업허가의 취소) 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제28조의 양식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양식업허가의 개시 및 휴업 등) 법 제52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22조에 따라 양식업의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휴업기간 중의 양식업 재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양식업허가

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양식업허가의 제한 및 정지) 허가권자는 허가를 한 양식업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실태, 양식업허가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 (세부설계도와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3. 시험양식업계획
4.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5.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6. 새로운 양식방법과 양식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양식업의 목적

2. 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에 관한 사항

제60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61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법 제6조의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특정 양식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친환경양식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양식업의 집적 또는 규모화 효과가 있는 경우

5. 양식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양식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식산업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3조(양식컨설팅 지원 등)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양식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경영·기술·재무·회계·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
2. 양식기술, 양식경영, 양식장환경 관련 전문기관 해당 여부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양식 컨설팅의 절차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식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컨설팅 실시기관은 컨설팅 기간 중에 서면 컨설팅 이외에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를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장의 면허권자 및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통보받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할 경우,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서
2. 소요예산내역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중 창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자금의 용자)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업”은 “양식산업”으로, “어업”은 “양식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조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14조, 「내수면어업법」 제13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1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하며,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허가어업”을 “허가어업·허가양식업”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농·어업”을 “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조제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양식업권·면허양식업 또는 허가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어업면허”를 “어업면허(양식업면허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④ 국립수산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어종별·양식방법별”을 “어종별”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⑦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한다.

⑧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면허양식업자

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 또는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⑪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수산업”을 “수산업·양식산업”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수산업”을 “수산업·양식산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수산업”을 “수산업·양식산업”으로 한다.

⑫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허가어업”을 “허가어업·허가양식업”으로, “어업권자나 어업”을 “어업권자·양식업권자나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허가어업”을 “허가어업·허가양식업”으로, “어업권자나 어업”을 “어업권자·양식업권자나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허가어업”을 “허가어업·허가양식업”으로,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나 어업·양식업의 허가”로 한다.

제15조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3)의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5.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⑮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라목을 각각 라목,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4조제1호마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면허양식업 또는 허가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제33조의2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양식업 또는 허가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3조의2제2의2호,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제4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면허양식업 또는 허가양식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제51조제3호,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68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시설물”로 한다.

⑪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물·채취물”로 한다.

제24조 중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물·채취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⑫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

업권”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⑲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⑳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㉑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어업면허증”을 “어업면허증·양식업면허증”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면허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어업·면허양식업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관련어업자”를 “관련 어업자·양식업자”

로 한다.

제2조제3항제7호 각 목 이외의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허가어업 또는 면허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하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면허·허가어업”을 “면허·허가어업 또는 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어류등양식어업”을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을 “어장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 또는 면허양식업”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을 “법 제27조제1항·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한다.

제9조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및 양식장”

으로 한다.

㉔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어업의 면허”를 “양식업의 면허”로 하고,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면허”로 한다.

㉖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수산물 양식시설의 대상 중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장어양식장 또는 일반양어장”을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어양식장 또는 일반양어장”으로 하고, “다.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을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로 한다.

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양식장기본도의 양식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양식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양식장의 구획, 양식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양식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표시한다.
- 나. 양식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양식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 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양식장과 개발하려는 양식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양식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가. 해조류양식장: 주황색
- 나. 패류양식장: 황색
- 다. 어류등양식장: 녹색
- 라. 복합양식장: 청색
- 마. 협동양식장: 남색

3. 양식장 간의 거리와 양식장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양식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양식장구역은 별표 3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구획하되,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구역의 한계, 양식장 간의 거리 등 양식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7조제2항 관련)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m' (ha)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의 시설방법·비율(제10조제1항 관련)

1. 해조류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업	1) 견홍식 가) 지주망홍 나) 부류망홍	1 이상	1 이상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8 이하
	2) 연승식	1 이상	1 이상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미역·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나. 바닥식 양식업	투석식 천해	30 이하	20 이하	200 이상	90 이상

2. 패류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업	1) 간석식				
	가) 수하연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나) 수평망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다) 수평끈식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2) 연승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3) 팻묵식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3 이상 10 이하
나. 바닥식 양식업	1) 살포식				
	가) 간석지	10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나) 천해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2) 투석식 등				
	가) 간석지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나) 천해	3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90 이상
	3) 칩하식 천해	10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다. 가두리식 양식업	가두리식	2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	------	-------	-------	--------	------------

3. 어류등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 조합)	어촌계 (지구별 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업	가두리식	10 이하	10 이하	300 이상	5 이상 20 이하
나. 축제식 양식업	축제식	20 이하	20 이하	-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업	1) 연승식 2) 뗏목식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라. 바닥식 양식업	1) 살포식 가) 간석지 나) 천해 2) 투석식 3) 침하식	100 이하 3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90 이상 20 이하 5 이상 10 이하

4. 복합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 조합)	어촌계 (지구별 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업	1) 연승식(해조류·패류·어류 등) 2)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패류)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20 이하	100 이상 200 이상	5 이상 10 이하(미역·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5 이상 10 이하
나. 바닥식 양식업	1) 살포식(패류의 전복·어류 등의 해삼) 2) 살포식과 투석식(패류)	3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10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10 이상 25 이하(굴) 80 이상(바지락)
다. 축제식 양식업	축제식(패류·어류 등)	20 이하	20 이하	-	20 이상
라. 혼합 양식업	1)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패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8 이하(해조류) 80 이상(패류)

	2) 연승식과 천 해 투석식(해조 류·패류)	20 이하	20 이하	200 이상	5 이상 10 이하(해조 류) 80 이상(패류)
	3) 침하식과 연 승식(해조류· 패류)	10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4)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 ·패류)	10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10 이하
	5)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 의 전복·어류 등의 해삼)	1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6)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 의 전복·어류 등의 해삼)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7)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 식 굴과 그 밖 의 패류)	5 이하	5 이하	100 이상	5 이상 30 이하
마. 가두리식 양식업	가두리식(패류 ·어류등)	10 이하	10 이하	100 이상	5 이상 20 이하

5. 협동양식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협동양식업과 마을어업이 연결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6. 외해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장구역의 한계 (단위: ha)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 조합)	어촌계 (지구별 조합) 외의 자		
외해가두리식 양식업	외해가두리식	5 이상 60 이하	5 이상 60 이하	500 이상	2 이상 20 이하

비고: 1.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 및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양식장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면적과 같은 양식장면적의 범위에서 양식장구역의 한계 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양식업의 종류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수조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2.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 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 수산동식물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2항관련)

양식업의 종류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 식물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 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 식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 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 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기타 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 식물	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양식업허가의 번호 부여 방법(제43조제7항 관련)

☐ 허가양식업

양식업의 종류별로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양식업의
종류, 허가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부산 육상수조양식 제2020-00호
인천 육상축제양식 제2020-00호

**양식업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새로운 양식업허가의
제한기간(제45조제1항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2. 허가받은 양식업 외의 양식업을 한 경우	2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2년
4.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개월

비고: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양식업허가가 취소된 양식장이 그 허가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의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을 2년으로 한다.

양식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6조 관련)

대상 양식업 및 품종	제한 및 조건
1. 육상등 내수양식업 중 왕우렁이 양식업	가. 왕우렁이의 생태계 유출 방지 시설 설치(용수로 및 배수로에 차단망·포집망 등 설치) 나.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수위 상승 등 왕우렁이 유출 예상 시기 중 왕우렁이 및 알의 수거 및 제거 활동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신 분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 부터 . . . 까지

위 사람은 「양식산업발전법」 제8
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토지, 양식
장 등을 출입조사 할 수 있는 사람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

의

직인

1.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중을 지
나 사람이 조사·측량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중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중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십시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4항 관련)

양식장이용개발계획서

(단위: 건, ha)

① 총 개발	기개발양식장			⑤ 총 미개발	⑥()년 ()개발계획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 상황					⑰ 개발하려는 사유
적지 면적	② 양식업별	③ 건수	④ 면적	적지 면적	⑦ 양식업별			⑧ 수면의 위치	⑨ 수면의 번호	⑩ 건수	⑪ 면적	⑫ 국가 공익면	⑬ 자원 보호면	⑭ 양식업 조정면	⑮ 수산 법규면	⑯ 기타	
					종류	양식 방법	품종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관할 시·군·구 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2. ② ~ ④란에는 이미 개발한 양식업의 종류(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와 건수, 면적을 적습니다.

3. ⑤란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앞 ()에는 개발연도를, 뒤 ()에는 정기, 변경이라 적습니다.

5. ⑦란 중 양식방법란에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른 양식방법을 적습니다.

6. ⑧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

7. ⑨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

8.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4항·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해야 할 법규의 관련 여부를 검토 후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10.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 등 그 밖의 수산자원 보호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1. ⑭란에는 보호구역 저축, 양식장과밀, 어도차단, 양식장구역 중복, 인근양식장과의 분쟁예상 등 그 밖의 양식업조정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2. ⑮란에는 낙도, 무인도, 양식장기점설치 가능 여부, 육지와외의 거리, 수심, 인근양식장과의 거리,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 등과의 관련여부를 적습니다.

13. ⑯란에는 그 밖의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

14. ⑰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려는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15. ⑫ ~ ⑯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적습니다.

369mm×268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3 -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승인(협의) 근거법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수면위치				
승인 또는 협의 양식업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 방법		면적	(ha)
승인(협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사상	
	개항안		공원안	
	특정 지역안		기 타	
승인(협의)신청 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 적		
	주 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개 발 계 획 내 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제 호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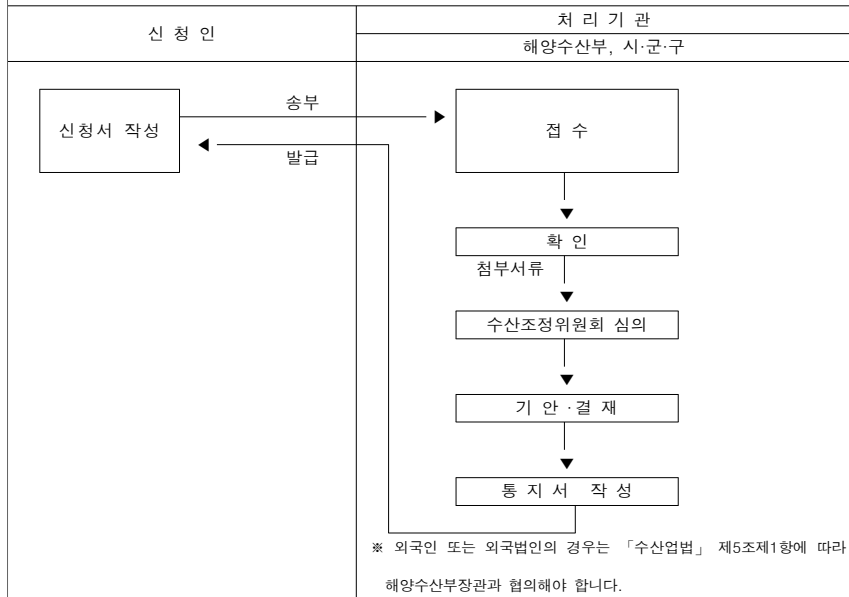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각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양식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1. 양식업면허(법 제15조 관련)

가. 개발계획의 내용

① 양식업 의종류	② 시설 방법	③ 양식수산물	④ 수면의 번호
--------------	------------	---------	-------------

나. 심의근거 및 내용

우 선 순 위	⑦ 법 제11조 해당 여부				⑧ 법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								⑨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⑩ 법 제15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제1항		제3항		제3호			제5호			제1항				제2항									
	제1 호 에	제2 호 에	제1 호 에	제2 호 에	제1호 에 해당되지 않음	제2호 에 해당되지 않음	가 목 에	나 목 에	다 목 에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가 목 에	나 목 에		다 목 에	제1 호 에	제2 호 에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제1 호 에	제2 호 에	제3 호 에	제4 호 에
																	경 영 자	종 사 자	경 영 자	종 사 자				
신 청 자	해 당 됨	해 당 됨	해 당 됨	해 당 됨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아 님	해 당 됨	해 당 됨	경 영 자	종 사 자	경 영 자	종 사 자	해 당 됨	해 당 됨	해 당 됨	해 당 됨	

다.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제5조제3항 및 제5항 관련)

면허의 우선순위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개 발 계 획 내 용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면 허 신 청 순 위	면허신청기간 . . .부터 . . .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면허우선순위자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심 의 요 령

- ⑦ ~ ⑩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 ⑧ 또는 ⑩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⑩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순위는 ⑩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520mm×268mm(신문용지 60g/㎡)

유 의 사 항

면허신청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식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 식 방 법
	양 식 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ha
	수면의 위치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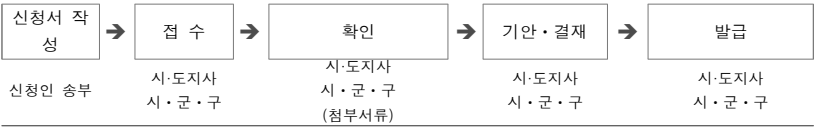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유 신청인 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양식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 적 : ha
------------	--	--------	--	------	-------------

양식방법·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	--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	-------------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양식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양식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 식 업 면 허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면허번호() 양식업면허 제 호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4.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양식장면적: ha

6. 양식방법:

7. 양식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개월)

8.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 제한 또는 조건:

10. 등록일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양식업권관리대장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		시설의 명칭 또는 양식방법		양식장면적 (ha)	
면 허 번 호 제 호		양식장위치			
양식업 권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계원수 명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업권 연장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시설량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 방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업의시기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가두리 시설규모 (㎡)					
공 익 상 지장 여부	군사관 계	어항	개항	특정지역	공원
					항로
					기타
					관계법 령
양식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년 월 일)				행사자 선정방법	
양식장의 관리선 사용	종류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	
	관리선 등록 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호톤수(톤)				
	마력(마력)				
양식장의 행사계약 관리	횟수	행사자의 대표 · 수	행사자 신분	행사계약기간	
	1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3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법규 위반사항	횟수	위반사항		경고일	
	1차			시정일	
	2차				
양식업권 이전·분할 또는 변경인가 사항					
유의사항					
1. 공익상 지장 여부란에는 "있음", "없음"으로 적고, "행사자 신분"란에는 "어촌계원" 등을 적습니다. 2. 양식장 어장도를 별첨합니다.					

257mm×364mm(인쇄 용지(2급) 60g/㎡)

양식장관리실태조사서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장 현황	양식업종류		시설명칭·양식번호			
	양식장면적 ha (장m×폭m)		양식장의 시설규모			
	양식장위치					
양식업권 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장 관리	관리방법	[] 직접관리 [] 행사계약관리		행사자수 명	연간 행사료 원	
	관리 또는 행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마을 이름	
	주소					
생산실적	양식수산물		연생산량 kg		총판매금액 천원	
	생산방법		작업일수 일	양식업경비 천원	수익금 천원	
양식장의 표지시설	육상기점설치	양식장경계시설	지정받 은 관 리선	척수 척	톤 마력 마력 마력	
	[] 시설함, [] 안 함	[] ()개 시설함, [] 안 함				
양식장의 위반 관리 및 대장 작성 비치 여부	양식장 임대	양식장 빈매	무신고 휴 업	관리규약 위 반	관 리 선 불법사용	무자격자 조 업
	생산일지	양식장관리부	회계장부	회의록	증거서류	기 타
시설내역	양식장					
	시설규모	가두리시설규모	종자살포량	시 설 비 율		
ha		m²	M/T	%		
수산업법규위반여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양식업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60g/㎡)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관리기록부

면허번호				주소			
소유주				전화번호			
작업자수				최 초 설 치 일			
구분	화장실 분뇨 등 수거기록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유지보수 기록			
	수거일	수거량	수거자	고장일	수 리 일	고 장 기 간 조 치 사 항	수리자
화장실							
생활하수 처리장치							

※ 작성요령

- 작업자수: 1일 평균 작업자수
- 고장기간 조치사항: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분변 및 하수 처리방법을 기록

※ 이 관리기록부는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60g/㎡)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 선정 · [] 변경, [] 지분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내용	양식업의 종류	신청면적	ha	
	양식방법·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 의 공유자 지분 변경 사 항	성명	변경 전 지분	변경 후 지분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양식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 번호	제 호	양식생물의 종류	
면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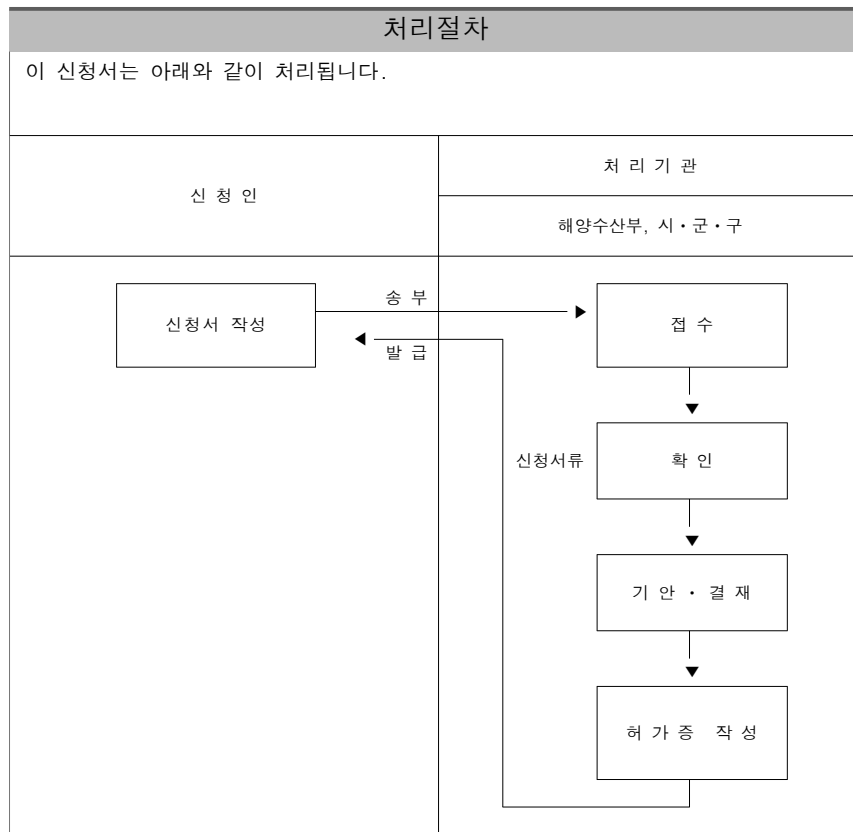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승인(협의) 신청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신청수면 (양식장)위치	(별첨 도면)				
신청양식업의 종류		양식 방법		시설 방법	면적 (ha)
승인(협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항안	
	개항안			공원안	
	특정지역안			군사관계지역	
승인(협의) 신청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항만건설상 지장				
	국토건설상 지장				
	항로상 지장				
	그 밖에 공익상 지장				
인접어업인 및 타어업과의 이해관계	인접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타 어업자와의 이해관계				
양식장 연혁	과거 신청양식장	과거 타인양식장	신규 개발양식장	과거 공동양식장	
양식장가치 (생산성)	양식생물 또는 양식장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	
그 밖의 참고사항					
승인(협의)처리에 대한 의견 및 참고사항					

268mm×380mm(신문용지 60g/㎡)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양식생물의 종류	
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연장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등록일자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양식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양식업 의 종류		면허번호	양식업면허 제 호	
포기일 자	년 월 일			
포기사 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제19조에 따라 양식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 확 인 →	→ 기안·결재 →	→ 발 급 →
신고인 송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 대조)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면허·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신청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생물의 종류	
	수면의 번호(면허) 제 호	수면의 면적 ha
	시설의 위치(허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허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제1항	
면허 우선순위 (면허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면허·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의 경우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1부 2)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각 1부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식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1부 4)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현황 1부 5) 해당 양식업면허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각 1부 2. 양식업허가의 경우 1)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1부 3) 관련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종합의견 1부 4)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양식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양식업면허 제 호	
	면허기간	. . . 부터 .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업권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신고인 송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첨부서류/양식업권 원부대조)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내용	양식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양식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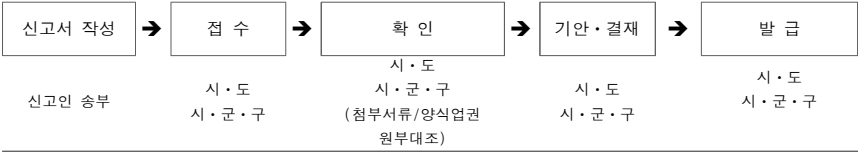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면허변경사항 신고서

([]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양식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양식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리선의 선박 명칭			
변경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증(양식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분기)양식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

가. 총괄표(년 월 일 현재) (단위: 건,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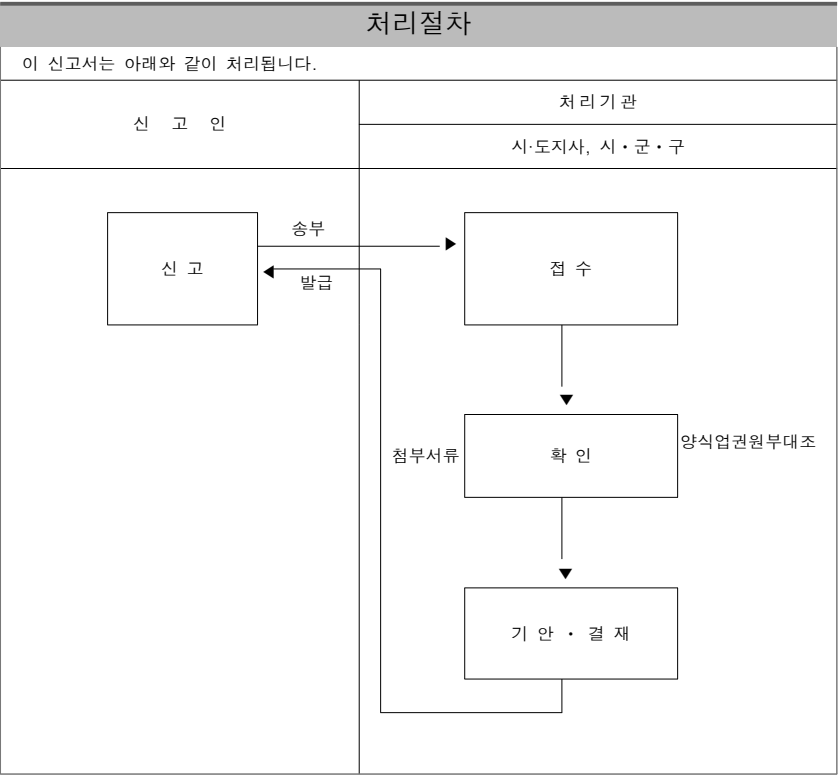
양식업별	구분	전분기말 양식업권		분기 중 포기 양식업권		분기 중 취소 양식업권		분기 중 면허 양식업권		금분기말 양식업권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 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 자연소멸어업권은 분기 중 포기어업권란에 적습니다.

나. (/)분기 양식업 처분실적

양식업의 명칭	면허 번호	양식업권자		면허 면적 (ha)	면 허 기 간	양식업권 이전인가		양식업권 변경인가		그 밖 의 번 동 및 처분사 항	경고, 취소 및 포기 사유	처분 연월일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268mm×380mm(신문용지 60g/㎡)



이전인가 신청서
([] 양식업권 [] 지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양식수산물		
이전 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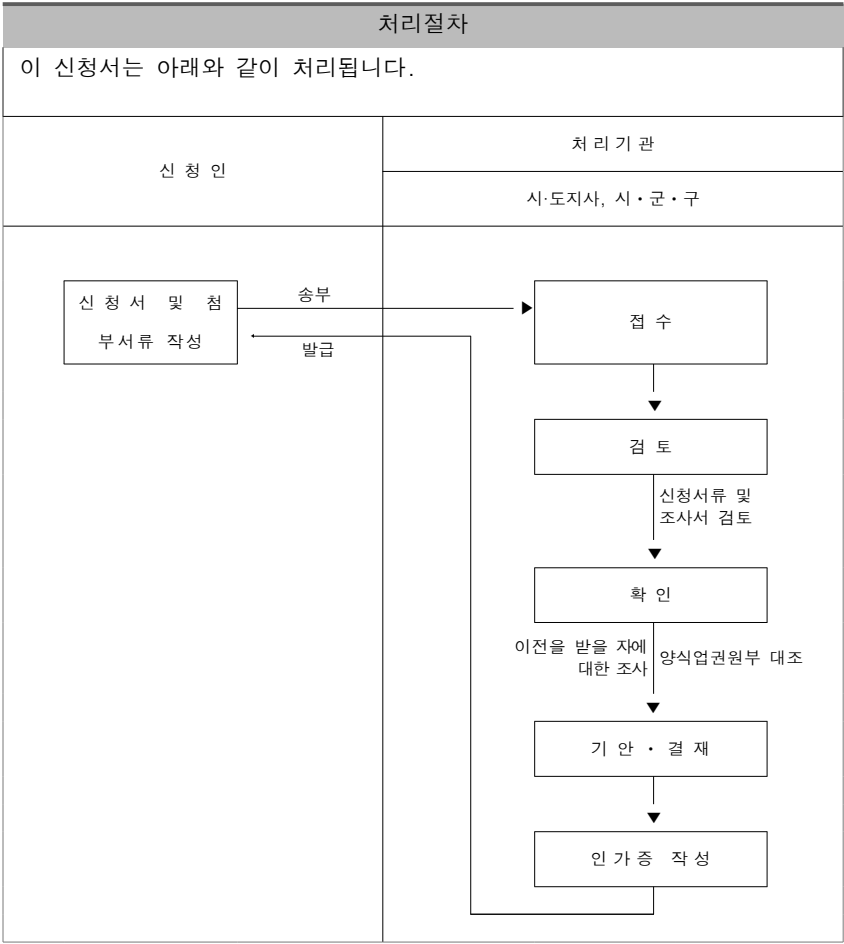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을 이전받을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해당 양식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부업
	주 소			
	양식장 위치			
	양식장의 종류	양식 방법	양식 시기	
	양식수산물		이전하려는 지분	
	면허번호	면허일 년 월 일	면허 만료일 년 월 일	면허면적 ha
	이전 사유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	이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이전하려는 자 및 이전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무			
	이전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대리인에 따른 신청일 경우 그 권한을 증명 하는 서류의 유무			
	그 밖에 이전인가에 필요한 서류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조사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부업
	주 소			
	어촌계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가입일자	
	재산정도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계 천원
	신용정도		경영 능력	
	수산법규 위반여부			
조사자의견				
종합평가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④ 성명 ④				

268mm×380mm(신문용지 60g/㎡)

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증

이전을 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전을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제 - 호	이전 받은 지분	
양식업의 종류		양식 방법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이전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권(지분)의 이전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양식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제 호		
양식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양식업권의 어장면적 ha			
양식업권을 분할 받을 자	성명	생년월일	양식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양식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양식장면적 ha
	주소		
분할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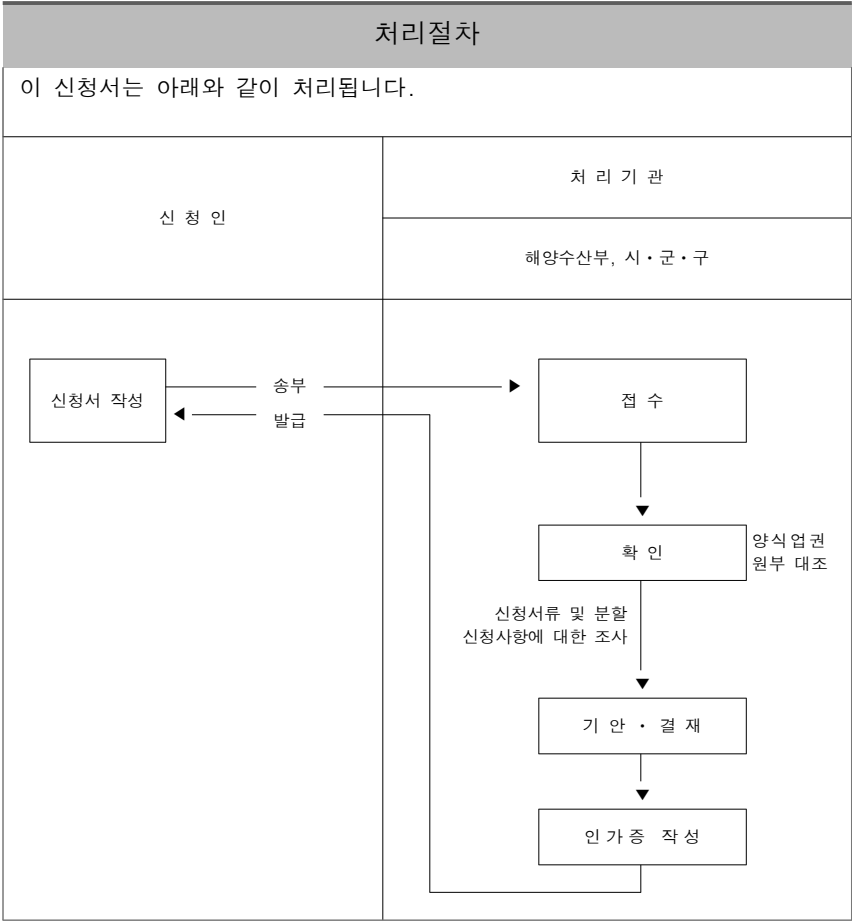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양식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양식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양식업권자 및 양식업권	성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소				
	양식장위치				
	면허번호	면허일	면허 만료일	면허면적	양식업시기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ha)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어업의 시기		
	양식수산물				
분할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자	수산물법규 위반여부				
	성명	생년월일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소				
	재산 정도	부동산 천 원		동산 천 원	계 천 원
	신용정도		경영능력		
	수산물법규 위반 여부				
	분할 또는 변경내용	종류	[] 양식업권분할()ha, [] 양식업권변경()		
사유					
내용		분할 또는 변경 전		분할 또는 변경 후	
그 밖의 참고사항 (먹이경쟁 및 해적생물관계 등)					
조사자의견					
종합평가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인 성명 인					

양식업권분할(변경)인가증			
분할(변경) 받은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분할(변경) 허가번호	제 - 호	분할양식장 면적	ha
변경대상	변경내용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시기			
분할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양식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변경 내용	양식업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장의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의 시설량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의 시기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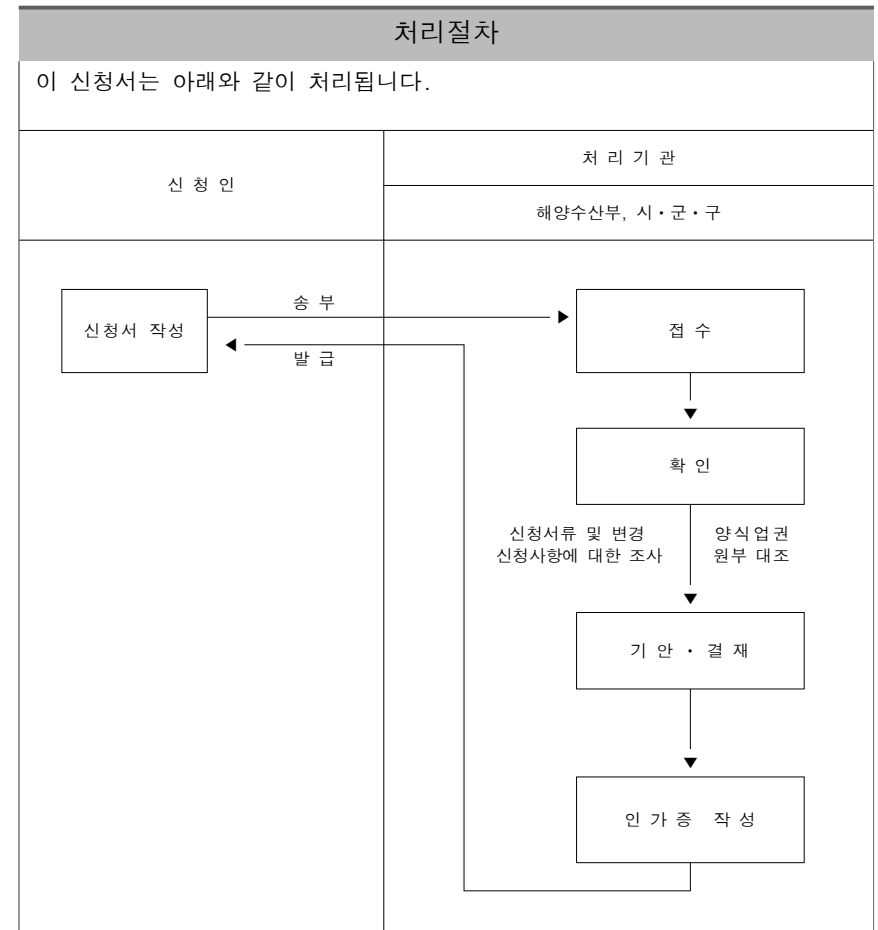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양식장구역과 양식장구역, 양식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뒤쪽)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주사무소)	생년월일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주사무소)	생년월일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자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양식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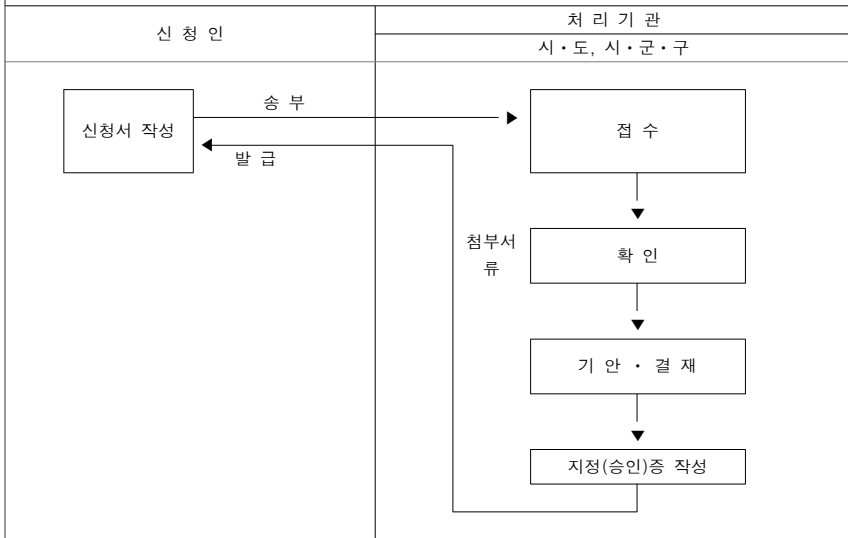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 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 사유	변경 사항	
	변경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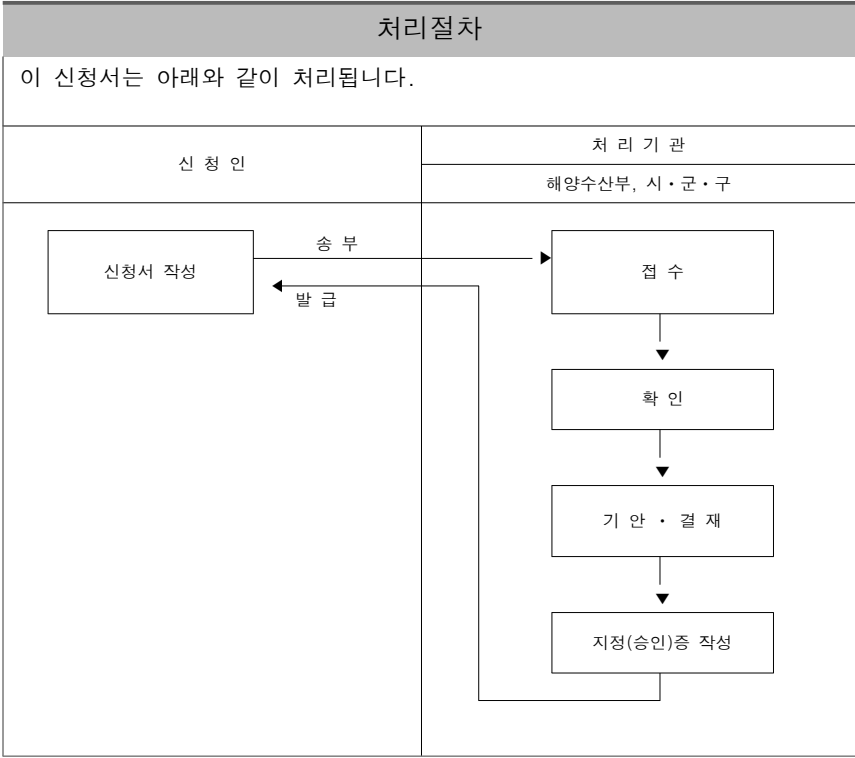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양식업면허증

[] 양식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 내용	양식업의 종류	면허(또는 허가)번호	
	양식업면허(또는 허가) 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분실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면허증, 양식업 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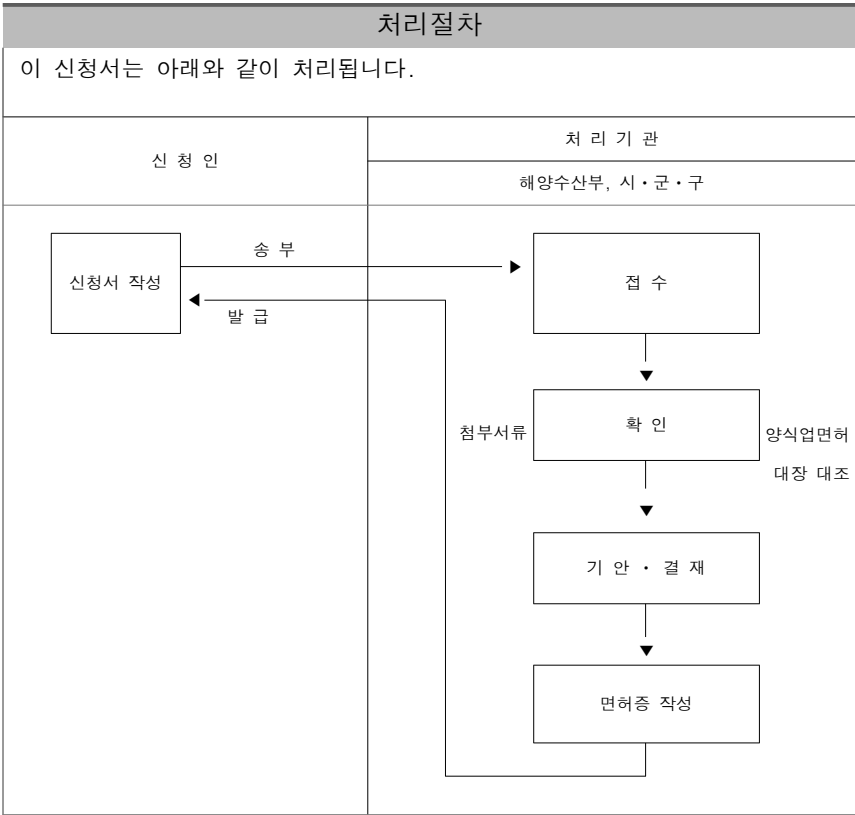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철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양식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사용시)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2007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해수양식업의 경우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경우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시설의 구조·면적·층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의 수조 또는 사육관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1부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 116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양식업허가 담당 부서)


```

graph TD
    A[신 청 서 작 성] --> B[접 수]
    B --> C[확 인]
    C --> D[기안 · 결재]
    D --> E[허가증 작성]
    E --> F[발 급]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nd receiving a license.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신 청 인' (Applicant) on the left and '처 리 기 관' (Processing Agency) on the right. The '처 리 기 관' section is further specified as '시·군·구 (양식업허가 담당 부서)' (City/County/District (Aquaculture License Management Department)).

The process steps are as follows:

- 신 청 서 작 성** (Application Form Filling) - Located in the '신 청 인' section.
- 접 수** (Reception) - Located 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 확 인** (Confirmation) - Located 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 기안 · 결재** (Proposal and Approval) - Located 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 허가증 작성** (License Issuance) - Located 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 발 급** (Issuance) - Located in the '신 청 인' section.

The flow starts with '신 청 서 작 성' in the '신 청 인' section, moves to '접 수' 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then proceeds through '확 인', '기안 · 결재', and '허가증 작성' within the '처 리 기 관' section, and finally ends with '발 급' in the '신 청 인' section.

양식업허가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양식업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허가의 유효기간		
제한 또는 조건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양식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양식업허가대장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유효기간				
양식업의 종류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양식업의 시기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제한 및 조건				
기 타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양식업불허가통지서

「양식산업 발전법」 제44조 및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 따라 양식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일자			
양식업의 종류			
불허 이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양식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 모)
양식업 허가번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양식업허가의 종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연장을 신청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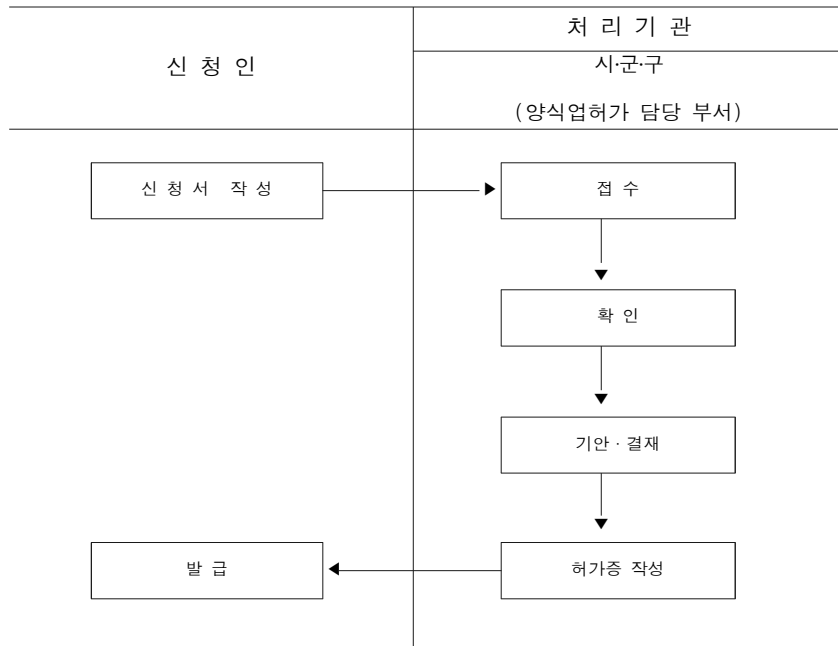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해수양식업의 경우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경우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40호서식](제51조제2항 관련)

양식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식업 허가번호	
-------------	--

변경 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가.
	나. 다.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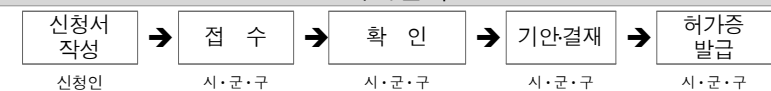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원	1. 양식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확인사항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양식업 허가번호			
양식업허가의 유효기간			
제출의 사유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허가증을 접수하고 이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주의: 이 접수증은 허가증의 정보를 수령하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식업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시·군·구	→ 확 인 시·군·구	→ 기안결재 시·군·구	→ 허가증 발급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식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26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제54조제1항 관련)

(제1쪽)

양식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의 명칭				
	시설의 규모				
	사용 장비				
	주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허가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수면)의 위치					
양식업의 시기					
양식수산물의 종류					
허가기간					
승계사유	☐ 양식업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상속	☐ 양식업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매입	☐ 양식업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임차		
「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7 -

(제2쪽)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식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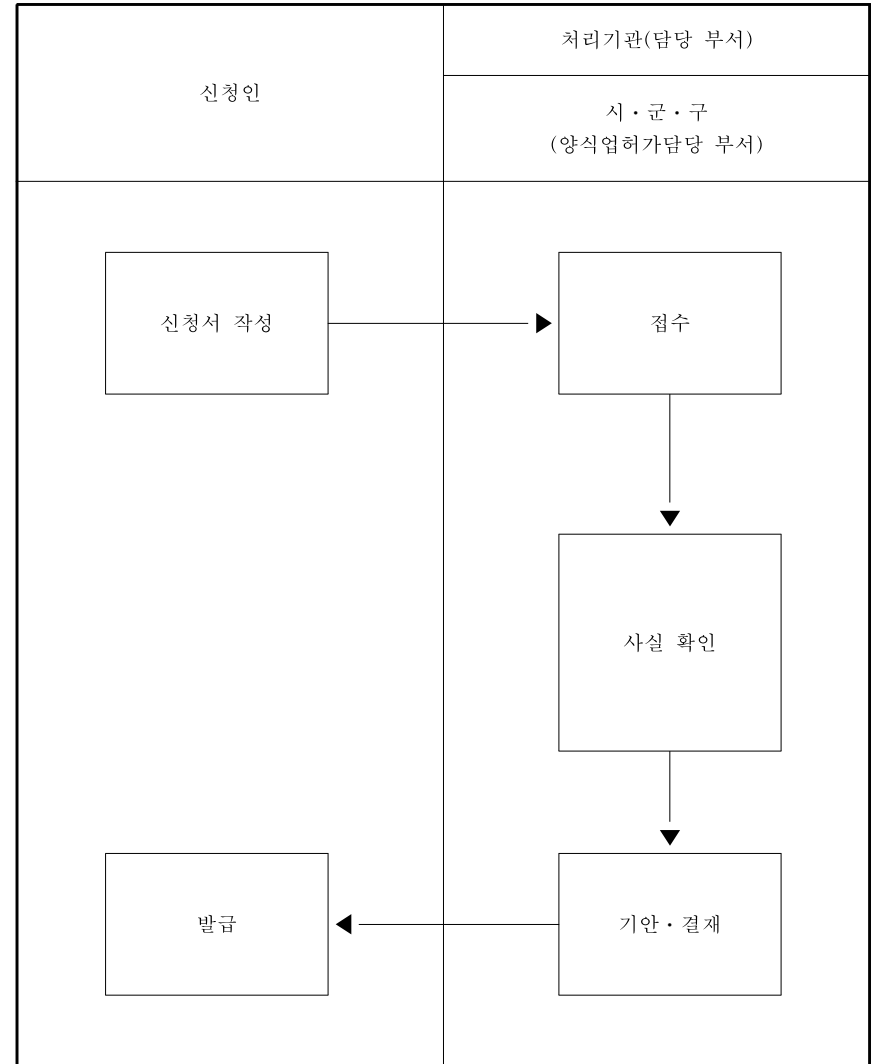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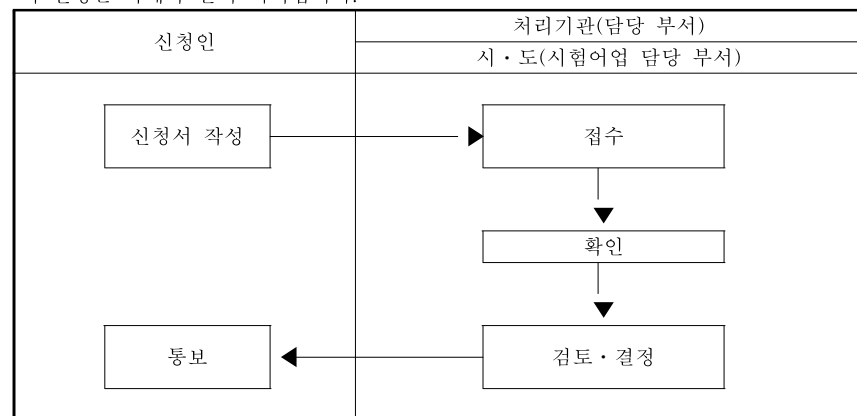
시험양식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시험조사의 목적과 사유							
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 방법과 시설의 명칭							
시험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선명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일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험양식업의 시기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제60조제2항·제3항 관련)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illegible][illegible]

양식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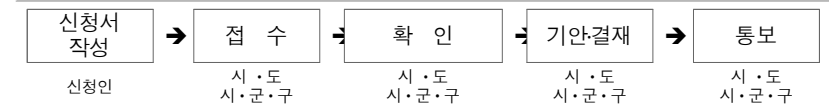
신청 내용	양식업의 종류		시설 또는 양식방법
	면허(또는 허가) 번호	면 적	품 종
	제 호	ha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양식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 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 133 -

(뒤쪽)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제62조제1항 관련)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보급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제64조제1항 관련) <신설>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창업의 목적과 사유							
창업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양식방법과 시설의 명칭							
관리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선명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일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창업의 시기							
양식창업 지원 신청금		원					
「양식산업 발전법」 제64조제1항 및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창업(사업)계획서 2. 소요예산내역서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